

《2021학년도 2학기 교수 초빙 공고》

**“충남과 세종의 대표 국립대학교”
국립 공주대학교에서 교수님을 모십니다**

1. 초빙분야 및 인원

구분	대학명	학과(전공)명	초빙분야	수요 인원	계열	세부 자격 조건	비고
전임 교원 (34명)	사범 대학	윤리교육과	동양윤리	1	인문 사회	- 연구실적률 300% 이상 (제출논문 중 채용분야 논문 주저자 200% 이상) - 한국윤리사상 강의 가능자	
			정치사회사상	1	인문 사회	- 연구실적률 300% 이상 (제출논문 중 채용분야 논문 주저자 200% 이상) - 통일교육론 강의 가능자	
		교육학과	교육사 및 교육철학	1	인문 사회		예비
		산업정보 교육과	회계학	1	인문 사회		
			경영정보	1	인문 사회		
		일반사회 교육과	법학	1	인문 사회	- 연구실적률 300% 이상 (제출논문 중 채용분야 논문 주저자 200% 이상)	예비
		물리교육과	응집물리실험	1	자연	-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지리교육과	도시지리학	1	인문 사회	- 연구실적률 300% 이상 - 중등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지구과학 교육과	천문학	1	자연	- 연구실적률 400% 이상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 천체관측 경력 우대	
		인문 사회 과학 대학	경영학과	생산관리	1	인문 사회	- Operations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로지스틱스 관리, 공급사슬관리 강의 가능자
	지리학과		지리통계학	1	인문 사회	-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강의 가능자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거시경제	1	인문 사회		예비
	자연 과학 대학	데이터정보 물리학과	실험물리	1	자연	- 계측시스템 개발 경력 보유자 -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또는 기계학습 관련 교과목 강의 가능자 - 최근 3년 이내 빅데이터 또는 기계학습을 활용한 연구실적을 주저자 우대 - 산업체 경력 2년 이상 우대	예비
				1	자연	-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 생화학 강의 가능자	

구분	대학명	학과(전공)명	초빙분야	수요 인원	계열	세부 자격 조건	비고
공과 대학		화학과	물리화학 또는 분석화학	1	자연		예비
		기계자동차 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열공학	1	자연	- 기계공학계열 학사 학위 소지자	
			생산공학	1	자연	- 기계계열 학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 생산공정 전공자 우대	
		신소재공학부 (금속재료공학전공)	구조용 비철금속재료	1	자연		예비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	1	자연	- 컴퓨터소프트웨어 (AR/VR) 강의 가능자	
			컴퓨터소프트웨어	1	자연		예비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데이터베이스 혹은 컴퓨터보안	1	자연	- 데이터베이스: 관계형DB 관련 논문 주저자 또는 DB 자격증 보유자 - 컴퓨터보안: 시스템 보안 및 암호학 논문 주저자 또는 보안 자격증 보유자	
		화학공학부	분리공정	1	자연		
			화학공정제어	1	자연		
		미래자동차 공학과	친환경자동차	1	자연	- 연구실적률 400%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JCR 상위 50%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자동차설계 및 해석 고체분야	1	자연	- 연구실적률 400%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JCR 상위 50%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예비
	산업 과학 대학	원예학과	원예작물보호학	1	자연		
		산업유통학과	벤처창업 또는 정보기술	1	인문 사회		
		부동산학과	부동산개발	1	인문 사회	-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식물자원학과	작물재배학	1	자연	- 연구실적률 400% 이상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3년 이상 - 강의경력 2년 이상으로 농업전공과목 강의 가능자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	1	자연			
간호 보건 대학		보건행정학과	헬스케어 ICT 융합분야 (AI, 보건인공지능시스템)	1	자연		
예술 대학	게임디자인학과	게임인공지능	1	자연	- 게임 제작 경력자 우대 - 인공지능 관련 강의 가능자 우대		
	세라믹디자인학과	도자융합분야	1	예체능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영어수업이 가능한 자 -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인공지능학부	인공지능	1	자연	-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 딥러닝 강의 가능자		
산학 협력	산업 과학	동물자원학과	수산양식학	1	자연		

구분	대학명	학과(전공)명	초빙분야	수요 인원	계열	세부 자격 조건	비고
중점교수(1명)	대학						
계				35			

- ※ 인터넷 접수기간: 2021.5.4.(화) 10:00 ~ 5.12.(수) 17:00까지(한국시간)
- ※ 서류 제출기간: 2021.5.4.(화) 10:00 ~ 5.12.(수) 17:00까지(한국시간)
- ※ 임용예정일은 '21.9.1.임. 다만, 비교란에 예비로 표시된 예비 분야는 최종합격자 선정 후 본교 결정 현황에 따라 '22.3.1. 임용 될 수 있음(임용 유예 여부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
- ※ 각 심사 단계별 합격자는 지원서에 작성한 메일로 안내 예정
- ※ 자세한 사항은 www.kongju.ac.kr 참조 ☎ 공주대학교 교무과 041-850-8018

2. 지원자격

○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통조건

-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연구경력에는 석·박사 학위 기간이 포함 됨(석사 최대 2년, 석·박사 최대 5년)

다. 박사학위 소지자(수여 예정자, 논문심사 완료 등 불인정), 다만, 예술대학 세라믹디자인학과의 경우 해당분야 석사이상

라. 우리 대학 임용 전까지 현 직장에서 사직 가능자

○ 계열별 자격 조건

가. 인터넷 접수 마감일인 2021. 5. 12.(수)을 기준으로 3년 이내(2018. 5. 13. ~ 2021. 5. 12.)에 발표된 연구실적물(학위논문 제외)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출한 자

초빙 분야별 세부 자격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열별 자격 조건과 초빙 분야별 세부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1) 인문·사회계열: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하 동일】 게재 논문 200% 이상. 다만, 제출 논문 중 단독저자, 주저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이 100% 이상이어야 함.
- 2) 자연계열: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200% 이상. 다만, 제출 논문 중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은 100% 이상이어야 하고, 단독저자, 주저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이 100% 이상이어야 함.
- 3) 예체능계열: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창작물(국제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실기발표 및 공연) 중 아래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가) 논문: 200% 이상
 - 나) 논문 + 창작물: 300% 이상(단, 논문 100% 이상 포함)
 - 다) 창작물: 400% 이상

※ 창작물은 [붙임 2] 예·체능 및 건축설계 연구실적 인정범위·기준 및 인정환산율표 참조
나. 영어 강의가 가능한 자(외국어공개강의 심사시 평가)

다.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 1)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항1호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해당분야: 채용제한 학사학위 대학 없음

○ 산학협력중점교수 공개채용 공통조건

-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에는 석·박사 학위 기간이 포함 됨(석사 최대 2년, 석·박사 최대 5년)
 다. 인터넷 접수 마감일인 2021. 5. 12.(수)을 기준으로 산학협력실적물은 최근 10년 이내, 연구 실적물(학위논문 제외)은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실적물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제출한 자
 초빙 분야별 세부 자격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조건과 초빙 분야별 세부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1) 산학협력실적물[기술이전, 국제특허등록, 국내특허등록, 산학관공동연구과제(연구책임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연구책임자)],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하 동일) 게재 논문 연구실적물 또는 창작물(국제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실기발표 및 공연) 중 아래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가) 산학협력 실적물: 200% 이상
 나) 논문 연구실적물: 200% 이상
 다) 산학협력실적물+논문 연구실적물: 200% 이상
 라) 창작물(예체능계열): 200% 이상
 마) 산학협력 실적물 + 논문연구 실적물 + 창작물(예체능 계열) : 200% 이상
- 마. 산업체(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참조)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서류접수 마감일 2021. 5. 12.(수) 기준]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초빙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 다만,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단,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기준 3년 완화 대상: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경력기준 1년 완화 대상: 석사 학위 소지자

3. 임용조건

■ 임용예정일

- 2021. 9. 1.자 임용예정이나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2022. 3. 1.자)될 수 있음
 ※ 35명 중 예비순위는 최종 채용인원이 26명을 초과 할 경우 2022. 3. 1.자에 임용 될 수 있음

■ 기타 조건

- 임용직명 및 기간 등은 관계법령 및 본교 인사 관계 규정에 따름

4. 접수기간

■ 전임교원

가. 인터넷 접수기간: 2021. 5. 4.(화) 10:00 ~ 5. 12.(수) 17:00 (한국시간)

- ※ 인터넷 접수 마감일은 접속인원 증가에 따른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력바람.
- ※ 본교 홈페이지 POPUP ZONE을 통해 인터넷 등록

나. 서류 제출기간: 2021. 5. 4.(화) 10:00 ~ 5. 12.(수) 17:00 (한국시간)

- ※ 위 마감시간 내 도착분만 인정함

*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이후 접수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접수 완료를 하지 않으면 접수처리가 불가능함

다. 서류 제출방법

- 1) 입력사항을 전부 기재한 후 출력하여 서류 접수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해외거주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인터넷 업로드를 하고, 접수완료 후 지원서를 출력하여 교무과 이메일로 지원서 제출(bon101@kongju.ac.kr) 가능
- 2) 지원서 내용은 서류 접수 전까지는 수정·보완할 수 있으나 서류 접수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전산 오류로 인하여 인터넷 등록사항이 수정이 된 경우에도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함
- 3)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

5. 접수처

- 방문 접수처: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한마루관(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
- 우편 접수처: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한마루관(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 우 32560)
- 연락처: 공주대학교 교무과 041-850-8018

6. 제출서류

▣ 전임교원

가. 교수 초빙 지원서

- 1)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교수초빙지원서, 경력사항(1 ~ 3), 연구실적목록(1~7)**
- 2) 본인직접작성: **8. 기타연구실적목록, 9. 연구실적 요약서(전체 각각작성), 10. 최종학위 논문 요지, 11. 자기소개서, 12. 제출서류 목록(서식 하단의 지원자 서명(날인)한 원본)】 각 1부.**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3) 교수 초빙 지원서 작성 시 연구실적물의 “제목”은 국문이나 영문으로 기재하되, 영문 이외의 외국어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기재. 다만,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은 반드시 영문으로만 기재(공동연구원이 국내인인 경우 한글로 작성)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성적·학력·경력 등) 제출 시 참고사항

- 외국의 대학 등에서 제작한 경력증명서(임용직명과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는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합격하여 본교 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 제출할 때 기재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음.
- ※ **아포스티유(apostille)** : 한 국가의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은 문서가 올바른 문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학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1)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확인 날인한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첨부
- 2) 학사 및 석사 편입학자의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제적사실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씩 반드시 제출(성적확인 과정에서 편입학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3)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 사본과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 신고필증 제출

다. 경력증명서 각 1부(교육경력, 연구경력, 산업체 및 기타경력 등)

- 1)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확인 날인한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첨부
- 2)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 제출
- 3) 외국 대학의 교원 및 연구원 등 경력증명서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임용 직명, 임용 기간, 근무시간, 보수 등을 명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대학 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책임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임용 직명, 임용 기간, 근무시간, 구체적 업무내용, 보수 등을 명시) 제출
- 4)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하단에 발행기관의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증명서 하단에 작성하여 제출
- 5) 경력증명서(교육, 연구 및 일반경력 포함)에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단, 영문 성적증명서와 논문 등의 연구실적물은 제외)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국문 번역문이나 공증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최종학위 논문 1부(요약서 포함)(무논문 제도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 확인서 첨부)

마. 연구실적물 별쇄본 1부 또는 Web상 제공되는 PDF파일 출력물 1부(요약서 포함)

※ 연구실적물 심층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5편 이내 300%까지(최근 3년 이내 박사학위 논문 포함 가능)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

- 1) 인터넷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에 한하여 제출 가능함이다.(Web상 제공되는 PDF파일 출력 연구실적물의 경우 논문 권, 호, 페이지 범위가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 게재 예정 연구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 이후에 등재지(후보지)로 소급하여 선정된 경우 해당 연구실적물은 추가로 제출할 수 없음.

- 2) 연구실적물은 국제전문학술지 및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만 제출 가능하고, 등재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작성한 모든 연구실적물 전체)

가)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포함) 논문은 <https://www.scijournal.org> 등 에서 확인한 증빙자료(작성한 연구실적물 전체 출력물) 제출

※ SCOPUS학술지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

나) 국내전문학술지는 www.nrf.re.kr 에서 등재학술지 목록(엑셀 자료)의 학술지명 확인이 가능한 면을 출력하여 제출

※ 연구실적물은 발표년도를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로 구분하여 심사함

3)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의 인용지수는 논문 발표년도 JCR의 Impact Factor를 의미하며, 해당 논문 발표년도의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 Impact Factor를 적용하고, 지원자는 Impact Factor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 (<https://jcr.clarivate.com> 논문 게재 연도 임팩트 팩터 출력물 첨부) 하여야 하며, 임팩트 팩터 착오입력 및 미 제출시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Year	Total Cites	Journal Cites	Journal Cites Without Self-Cites	5-Year Impact Factor	Essential Index Score	Citation Index Score	Cited Half-Life	Citing Half-Life	Eigenfactor Score	Article Influence Score	% of Articles in Complete Sets	Normalized Eigenfactor Score	Average % of Citations
2018	115	2,493	2,442	2.985	0.785	1.224	12.2	0.07	0.025	0.01	99.97	0.43	53.745
2017	115	2,149	2,098	2.191	0.684	1.198	11.4	0.08	0.025	0.01	99.97	0.31	50.204
2016	115	2,029	2,029	2.177	0.681	1.205	10.0	0.10	0.025	0.01	99.97	0.27	50.781
2015	115	2,187	2,187	2.280	0.808	1.288	9.3	0.11	0.025	0.01	99.97	0.31	57.514
2014	123	2,302	2,302	2.485	0.754	1.323	9.0	0.14	0.025	0.01	99.97	0.35	58.705
2013	121	2,377	2,377	2.527	0.717	1.251	8.3	0.15	0.025	0.01	99.97	0.35	57.181
2012	116	2,607	2,607	2.702	0.603	1.410	7.5	0.16	0.025	0.01	99.97	0.44	74.444
2011	116	2,698	2,698	2.981	0.718	1.388	6.7	0.16	0.025	0.01	99.97	0.58	78.402

- 4) Online논문(인쇄물로 출판되지 않고, web에만 출판되는 논문)의 경우는 권(volume)이 표시되어야 함.
- 5)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연구실적물은 영문 또는 국문 초록을 포함하여 제출
- 6) 예·체능계열 창작물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제출

※ 창작물 실적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실적물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에서 제외 될 수 있음.(단, 원본제출이 어려울 경우 공증을 받은 사본도 원본으로 인정함)

■ 산학협력중점교수

가. 교수 초빙 지원서

1) 교수초빙지원서, 경력사항(1 ~ 3), 연구실적목록(1~7), 8. 기타연구실적목록, 9. 연구실적 요약서(전체 각각작성), 10. 최종학위 논문 요지, 11. 자기소개서, 12. 제출서류 목록(서식 하단의 지원자 서명(날인)한 원본) 각 1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교수채용시스템 지원이 아닌 위 '가-1'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논문의 경우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에 한하여 제출 가능하고, 산학협력 실적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의 실적에 한하여 제출 가능 (Web상 제공되는 PDF파일 출력 연구실적물의 경우 논문 권, 호, 페이지 범위가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 산학협력 실적 : 특허증, 금액과 연구원 수가 표시된 기술이전·연구과제 계약서)

* 게재 예정 연구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 이후에 등재지(후보지)로 소급하여 선정된

경우 해당 연구실적물은 추가로 제출할 수 없음.

3)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원본 1부와 사본1부를 제출

※ 산학협력실적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실적물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에서 제외(단, 원본제출이 어려울 경우 공증을 받은 사본도 원본으로 인정함)

4)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연구실적물은 영문 또는 국문 초록을 포함하여 제출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산업체 경력 확인용)

다.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에서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1부. (Ex: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라. 각종 수상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마.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과제 수주 계획서 1부

바. 자격, 면허, 지적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사. 전문가 2인 이상의 추천서 각 1부

아. 연구실적물 반환 서약서 1부(심사탈락 시 연구실적물 반환을 원할 경우)

자. 각종 증명서(학력, 경력 등) 제출 관련 사항은 전임교원의 요구조건과 동일함

7. 전형방법

■ 전임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가. 채용을 위한 심사는 기본자격심사, 전공일치도심사, 연구실적물 심층심사, 공개강의심사 및 외국어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외국어공개강의 심사는 영어강의를 원칙으로 함)

나. 공개강의심사(외국어강의 심사 포함) 및 면접심사 대상자는 E-mail로 개별 통지

8.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 통지

9. 임용기간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따름.

10. 유의사항

가. 전형에 최종 합격한 자는 신원조사,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2021년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나, 예비 순위 학과(전공) 합격자는 최종 채용인원이 26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 순위에 따라 2022. 3. 1.자에 임용 될 수 있음.

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됨.

다.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초빙분야에 중복지원은 불가능 함. 중복지원시 중복지원한 지원자의 서류는 중복지원 분야 모두 심사에서 배제함.

【붙임 2】

예·체능 및 건축설계 연구실적 인정범위·기준 및 인정환산율표

인정범위·기준	인정환산율
1. 미술	
(1) 개인전	100%
(2) 2인전	
① 국제	90%
② 국내	70%
(3) 3인전	
① 국제	70%
② 국내	50%
(4) 공모전	
① 국제 특선 이상	100%
② 국제 입선	70%
③ 국내(전국) 특선 이상	70%
④ 국내(전국) 입선	50%
(5) 공인된 초대전 또는 기획전	
① 국제	70%
② 국내	30%
(6) 국제전 심사위원 1회	100%
(7)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①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100%
② 시도 단위 공모전 심사위원 1회	50%

* 1. 미술의 (6), (7)항목은 연구실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인”이란 “지자체(군 제외) 및 공공기관에 등록된 학회, 협회, 언론사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한 것”을 의미함.

【붙임 3】 (인터넷 접수 시 Web상에서 입력)

※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붙임 3]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지원



공주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지원서

*접수번호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칼라 사진)
성명	한글			지원 분야	대학(원)			
	한자				학부(과)/ 전공			
	영문				초빙분야			
생년월일	(만 세)				국적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면제사유			복무기간	~		
주소	국내	(우편번호 :)						
	국외							
연락처	자택				직장			
	휴대폰				e-mail			
현직	근무처			직위			근무기간	~
학 력 사 항	학위명	학교명	학과(부)명	전공명	평점평균	재학기간	학위취득일	
	고등학교					. . .		
	학사					. . .		
	석사					. . .		
	박사					. . .		
학 위 논 문	석사	학위명			발표년월일			
		지도교수 (대학명)			취득국가			
	박사	학위명			발표년월일			
		지도교수 (대학명)			취득국가			

* 평점평균은 학년전체 성적이며, 외국대학에서 평점평균이 기재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성적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취득평점 성적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 및 석사 편입학자의 경우 편입 전 대학의 학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경력(석사학위 취득 이후) (인터넷 접수 시 Web상에서 입력)

가. 전임교원

근무기관	직급(직위)	상근/ 비상근	재직기간		주 당 당시수	담당직무 (강의과목명)
			기 간	재직년수		
			~			
			~			
계						

- * 전임교원 경력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전임교원 경력은 석사학위 이후에는 교육 경력만 인정하고, 박사학위 이후에는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모두 인정합니다.
- * 기재된 경력은 증빙서류(원본)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등교사

근무기관	직급(직위)	상근/ 비상근	재직기간		주 당 당시수	담당직무 (강의과목명)
			기 간	재직년수		
			~			
			~			
계						

- * 중등학교 교육경력은 대학 강의경력의 50%를 인정합니다.
- * 기재된 경력은 증빙서류(원본)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간강사 및 비전임교원 경력(대학 강의경력만 인정)

학기명 또는 기간	총 주당 수업시수	환산경력 (자동계산)	대 학 명(강의시간)
예) "2018학년도 1학기"	7시간	3월	A대(3), B대(3)
"2018학년도 2학기"	6시간	2월12일	A대(6), C대(6)
"2019학년도 1학기"	5시간	1월24일	B대(3)
"2019학년도 2학기"	4시간	1월24일	B대(6)
계			

- * 최근년도부터 학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학 강의경력만 인정하고 계절학기 강의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경력은 시간강사 등의 경우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시간당 10%를 가산하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환산경력은 계산값에 따라 기재:
 - 총 주당 시수가 7시간 이상인 경우: 3월
 - 총 주당 시수가 6시간인 경우: 2월 12일
 - 총 주당 시수가 5시간 이하인 경우: 1월 24일
- * 기재된 경력은 증빙서류(원본)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부 강의 외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강의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경력(박사학위 취득 이후) (인터넷 접수 시 Web상에서 입력)

가. 연구기관 및 대학 경력

근무기관명	직급(직위)	상근/ 비상근	재직기간		연구수행사항
			기 간	재직년수	
			~		
			~		
			~		
계					

- * 연구원, Post-Doc 등 연구경력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초교 경력 입력 불가)
-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기간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한 가지만 인정합니다. 다만, 전임교원 경력은 석사학위 이후에는 교육경력만 인정하고, 박사학위 이후에는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모두 인정합니다.
- * 지원자격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학과에 지원하는 석사학위 소지자의 연구경력은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전임교원 경력은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모두 인정합니다.
- * 기재된 경력은 증빙서류(원본)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채용분야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산업체 경력

근무기관명	직급(직위)	상근/ 비상근	재직기간		담당직무 (구체적으로 기재)
			기 간	재직년수	
			~		
			~		
			~		
계					

- * 지원자격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학과에 지원하는 석사학위 소지자의 연구경력은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을 말합니다.(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경력 전체 입력)
- * 기재된 경력은 증빙서류(원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경력 (인터넷 접수 시 Web상에서 입력)

근무기관명	직급(직위)	상근/ 비상근	재직기간		담당직무 (구체적으로 기재)
			기 간	재직년수	
			~		
			~		
			~		
계					

- * 교육경력, 연구경력, 산업체 경력을 제외한 경력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된 경력은 증빙서류(원본)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적 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실적은 인터넷 접수 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전체 연구실적물을 기재 하되, 연구실적물을 분류하여 최근 발표된 순서대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구실적물 심층 심사대상 5편, 300%(연구실적물 심층심사에 한해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 포함 가능)에 대하여 본인이 선택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적 구분

- 국제전문학술지: SCI(Science Citation Index),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등재 및 인용지수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SCOPUS는 해당사항 없음

-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등재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의 인용지수는 논문 발표년도 JCR의 Impact Factor를 의미하며, 해당 논문 발표년도의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 Impact Factor를 적용하고, 지원자는 Impact Factor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https://jcr.clarivate.com> 논문 게재 연도의 임팩트 팩터 출력물 첨부)

- 연구실적물의 “참여자 수” 는 본인을 포함한 총 인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참여자명 기재시 국내인의 경우 반드시 한글로 작성)
- 연구실적물의 “발표일자” 는 연구실적물의 최종 출판(인쇄)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연구실적물에 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 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기된 해당 월의 1일에 출판된 것으로 간주하며, 연구실적물의 게재지, 게재일, 발표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 해당 연구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실적물의 “제목” 은 발표지에 있는 그대로 국문이나 영문으로 기재하되, 영문 이외의 외국어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전문학술지는 영문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연구실적 목록]

※ 연구실적목록은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작성하시기 전에 평가기준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작성 오류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1. 지원자 인적사항 (인터넷 접수 시 Web상에서 입력)

초빙분야		성명	
대학(원)명		학부(과)/전공	

2. 국제전문학술지 (인터넷 접수 시 Web상에서 입력)

순번	심사 선택	논문 제목	발표 연월일	참여자수 (본인 포함)	단독저자, 주저자, 공동저자 (선택)	인용 지수	인정 환산율	게재 학술지			비고	
								학술지명 (인터넷주소기재)	권	호		쪽수

* 구분란에는 SCI, A&HCI, SSCI 및 SCIE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논문 및 학술지명은 정식 명칭을 영어로 기재합니다.(약자 기재 금지)

3.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인터넷 접수 시 Web상에서 입력)

심사 선택	논문 제목	발표 연월일	참여자수 (본인 포함)	단독저자, 주저자, 공동저자 (선택)	인정 환산율	게재 학술지			비고	
						학술지명 (인터넷주소기재)	권	호		쪽수

9. 연구실적 요약서(직접 작성하여 서류제출 시 제출, 연구실적물 전체)

연구실적 요약서(연구실적별 각각 작성)

대학(원)명	사범대학		학부(과)/ 전공	문헌정보교육과	
초빙분야	문헌정보학분야 독서교육		성 명	홍길동	
일련번호	1	연구자	홍길동, 홍길순, 홍길팔...		단독저자,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선택하여 작성
제 목					
게 재 지		발표년월일		게재면 (권, 호, 쪽수)	
내 용	한글로 작성				

* 연구실적(심사대상 및 비대상 모두)마다 별지로 작성하고, 칸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명 작성시 국내인의 경우 반드시 한글로 작성(국제논문 포함)

10. 최종학위 논문 요지(직접 작성하여 서류제출 시 제출)

최종학위 논문 요지

대학(원)명	사범대학		학부(과)/ 전공	문헌정보교육과	
초빙분야	문헌정보학분야 독서교육		성 명	홍길동	
제 목					
내 용	한글로 작성				

* 국문으로 작성하되, 칸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자기소개서 (직접 작성하여 서류제출 시 제출)

자기소개서

한글로 작성

Blank box for writing the self-introduction letter in Korean.

* 서식은 변경이 가능하며, 본인의 주요 연구업적, 수상경력(인터넷 접수 후 증빙서 사본 제출), 지원동기, 및 중.단기 연구계획, 강의가능과목(개설하고자 하는 과목 포함) 및 교육계획, 본인의 강점 등을 작성

12. 제출서류 목록 (직접 작성하여 서류제출 시 제출)

가. 교수초빙지원서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직접 작성하여 지원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교수초빙지원서, 경력사항(1 ~ 3), 연구실적목록(1~7)
- 본인직접작성: 8. 기타연구실적목록, 9. 연구실적 요약서(전체 각각작성), 10. 최종학위 논문 요약, 11. 자기소개서, 12. 제출서류 목록(서식 하단의 지원자 서명(날인)한 원본)】 각 1부,

나. 학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각 1부(교육경력, 연구경력, 산업체 및 기타경력 등)

라. 최종학위 논문 1부(무논문 제도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확인서 첨부)

마.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별채본 1부 또는 Web상 제공되는 PDF파일 출력물 1부

※ 인터넷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표된(2018. 5. 13. ~ 2021. 5. 12.) 연구실적물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Web상 제공되는 PDF파일 출력 연구실적물의 경우 논문 권, 호, 페이지 범위가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 게재 예정 연구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음.

바. 기타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

위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공주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지원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지원서 및 제반서류에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임용취소 등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공주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업무 시행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위한 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등

- 가.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다른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 나. 총장은 신규로 공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 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정의

본 지침에서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4. 자격

전임교원 신규채용 예정자는 아래의 최소 기본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하되, 채용분야별 기본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의 전원 동의를 받아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가. 학력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에 1회 이상 응모자가 없는 분야이거나, 학문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다.

나. 연구실적물

1) 일반 전임교수

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학위 논문 제외)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출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공개채용에 1회 이상 응모인원이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분야에는 총장이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1) 인문·사회계열 :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게재 논문 2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 논문 중 단독저자, 주저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 (2) 자연계열 :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2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 논문 중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은 100% 이상이어야 하고, 단독저자, 주저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 (3) 예·체능계열 :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창작물(국제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실기발표 및 공연) 중 아래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논문 : 200% 이상

(나) 논문+창작물 : 300% 이상(단, 논문 100% 이상 포함)

(다) 창작물 : 400% 이상

2) 산학협력중점교수

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학협력실적물은 최근 10년 이내, 연구실적물(학위논문 제외)은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실적물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제출한 자이어야 한다.

- (1) 산학협력실적물[기술이전, 국제특허등록, 국내특허등록, 산학관공동연구과제(연구책임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연구책임자)],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게재 논문 연구실적물 또는 창작물(국제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실기발표 및 공연) 중 아래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산학협력 실적물: 200% 이상

(나) 논문 연구실적물: 200% 이상

(다) 산학협력실적물+논문 연구실적물: 200% 이상

(라) 창작물(예체능계열): 200% 이상

(마) 산학협력 실적물 + 논문연구 실적물 + 창작물(예체능 계열) : 200% 이상

다.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기준 및 인정환산율

- 1) 일반 전임교수 및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연구실적물에서의 역할 및 참여자수에 따른 인정환산율은 [별첨 10]에 의한다. 또한 일반 전임교수 및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예·체능 및 건축설계 실기(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에 대한 인정범위·기준 및 인정환산율은 [별첨 11]에 의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별첨 11]의 적용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학과장(전공주임)이 연구실적 인정범위·기준 및 환산율을 별도로 제출한 경우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정원배정 및 심사절차 등

가. 정원배정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고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정원배정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1) 대학(원) 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2/3 이상 동의서 및 회의록 첨부

2) 본부, 부속시설 등: 해당 기관(시설)위원회 동의서 및 위원회 회의록 첨부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특정대학 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관련 학과(전공)의 전원 동의하에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가능

나. 심사절차

- 1) 응모인원이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지원자격의 2배 이상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필요한 심사는 기본자격심사, 전공일치도심사, 연구실적물 심층심사, 공개강의심사, 외국어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심사 순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외국어 공개강의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심사기준

1) 기본자격심사

- 가) 심사내용 및 방법: 제출서류를 근거로 기본자격 심사기준 [별첨 2], [별첨 9]에 의거하여 1. 교수자격기준의 교육·연구경력 충족여부(산학협력 중점교수의 경우 산업체경력 충족여부), 2. 연구실적물 충족여부, 3. 초빙공고에서 지정한 별도자격 충족여부, 이상 3가지 항목을 심사하여 각 항목별 통과여부를 [별첨 1], [별첨 1-1]에 pass/fail 방식으로 하되,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모든 항목이 “pass” 되어야 기본자격심사를 통과자로 처리하며, 탈락자의 경우 탈락사유서 [별첨 13] 및 [별첨 13-1]를 작성하여,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탈락자로 처리한다.(단,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탈락자가 재심사를 통과할 경우에는 기본자격심사 통과자로 처리한다)

- 나) 심사위원: 기본자격심사는 초빙분야 해당학과 학과장(전공주임)을 포함(부제시 업무대리자) 하여 모집분야의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전공자 3명으로 한다.

- 다) 심사결과 제출: 심사결과는 심사종료 즉시 심사위원 각자가 밀봉 날인하여 교무과에 직접 제출한다.

2) 전공일치도 심사

- 가) 심사대상: 기본자격심사 통과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나) 전공일치도 심사내용 및 방법

- (1) 심사위원: 모집분야의 해당 학과(전공) 교수를 포함하여 모집분야의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자 6명(2분의 1 이상은 교외인사로 함) 이내로 한다.
- (2) 제출서류를 근거로 전공일치도 심사기준[별첨 4]에 의거 심사하되, [별첨 3] 및 [별첨 3-1], [별첨 4-1]의 전공일치도심사표에 심사항목별로 점수를 기재하며,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동점의 경우 각각 그 하나를 제외함)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 (3) 심사는 학내·외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4) 심사결과 제출: 심사결과는 심사종료 즉시 학내·외 심사위원들 각자가 밀봉 날인하여 교무과에 직접 제출한다.

※ 기본자격심사와 전공일치도 심사는 동일한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3) 연구실적물 심층심사

- 가) 심사대상: 취득점수 순으로 10위까지를 연구실적물 심층심사대상으로 한다.

- (1) 선발범위 안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선발한다.

- 나) 심사위원: 모집분야의 해당 학과(전공) 교수를 포함하여 모집분야의 전공자 또는 관련이 있는 전공자 5명 이상(3분의 1 이상은 교외인사로 함)으로 한다.

다) 심사내용 및 방법

- (1)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물 중 지원자가 선택한 5편 이내 (최대 300% 까지, 별첨 10, 별첨 11 인정환산율 적용)의 연구실적물(박사학위논문 포함 가능)의 우수성, 기여도(저자 수, 단독저자, 주저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여부), 인정지수 등을 심사하여 [별첨 5]에 따라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정해진 기간 이내 논문 연구실적물 또는 산학협력실적물 중 지원자가 선택한 5편(건) 이내의 실적물에 대하여 저자 수, 단독저자, 주저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여부, 인정지수(논문 연구실적물), 발명자수, 주발명자 여부(기술이전, 특허), 연구책임자 여부(연구과제) 등을 [별첨 5-1]에 따라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 심층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제출한 박사학위논문과 동일 또는 편집하여 제출한 논문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심사결과 점수산정은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동점의 경우 각각 그 하나를 제외)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 (3) 심사결과 점수는 40점 만점으로 하되, 지원자 개인별 심사 점수 산출방법은 (해당 지원자 환산 총점수/지원자 환산 총점수 중 최고 점수) × 40 으로 한다.
- (4) 심사는 학내·외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라) 심사결과 제출: [별첨 5](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별첨 5-1])의 연구실적물 심층심사서에 의거 작성한 심사결과는 심사종료 즉시 학내·외 심사위원들 각자가 밀봉 날인하여 교무과에 직접 제출한다.

4) 공개강의심사

- 가) 심사대상: 전공일치도심사 및 연구실적물 심층심사 점수를 배점비율에 따라 합한 결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한다. 다만, 선발 범위 안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나) 심사위원: 모집분야의 해당 학과(전공) 교수를 포함하여 모집분야의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전공자 5명 이상으로 한다.

다) 심사내용 및 방법

- (1) 공개강의 주제는 지원자가 해당 초빙분야 중에서 선택하여 40분간 강의(질의응답 포함)하며, 심사위원은 교수내용, 교수방법 등을 심사하여 [별첨 6]의 공개강의심사평정표에 의거 심사한다.
- (2) 공개강의 점수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별첨 6]의 공개강의심사평정표의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동점의 경우 각각 그 하나를 제외함)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 (3) 공개강의심사일 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인 공개강의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간 화상으로 공개강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라) 심사결과 제출: 심사결과는 심사종료 즉시 심사위원들 각자가 밀봉 날인하여 교무과에 직접 제출한다.

5) 외국어 공개강의심사

- 가) 심사대상: 공개강의심사 대상자를 외국어 공개강의심사 대상으로 한다.

- 나) 심사위원: 외국어 능력 심사가 가능한 학내·외 심사위원 5명 이내로 한다.

- 다) 외국어 공개강의는 영어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학과의 요청에 의하여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심사내용 및 방법

- (1) 외국어 공개강의는 모집분야 관련 학부과목을 40분간 강의(질의응답 포함)하며, 심사위원은 외국어 강의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첨 7]의 외국어 공개강의 심사평정표에 의거 심사한다.
- (2) 외국어 공개강의 점수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별첨 7]의 외국어 공개강의심사 평정표의 합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동점의 경우 각각 그 하나를 제외함)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
으로 산출하되, 70점 이상 취득자를 채용분야의 적격자로 정한다. 다만, 외국어 심사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외국어 공개강의 심사일 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인 공개강의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간 화
상으로 외국어 공개강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 제출: 심사결과는 심사종료 즉시 심사위원들 각자가 밀봉 날인하여 교무과에 직접
제출한다.

6) 면접심사

가) 심사대상: 외국어공개강의심사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배점비율에 따라 합한 결
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2배수 이내를 면접심사 심사대상으로 한다.

나) 심사위원: 신규채용 전공분야별 5명으로 하되, 총장·교무처장·해당 대학(원)장과 학과(전공)장
및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인으로 하되, 신설학과로 당해 학과(전공)장 및 교원이 없
는 경우에는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교원으로 한다.

다) 심사내용 및 방법

(1) 교수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평가하되, 점수범위는 68점에서 100점으로 하며, 산정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동점의 경우 각각 그 하나를 제외함)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2) 면접심사일 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인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간 화상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심사결과 제출: [별첨 8]의 면접심사평가서에 의거 작성한 심사결과는 심사종료 즉시 학내·외
심사위원들 각자가 밀봉 날인하여 교무과에 직접 제출한다.

가. 신규채용의 심사단계별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자별 최종점수는 [별첨 3] 및 [별첨 3-1],
[별첨 5] 및 [별첨 5-1], [별첨 6], [별첨 7], [별첨 8]에 의한 각 심사단계별 산출점수에 배점비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기본자격심사	pass/fail
2) 전공일치도심사	20%
3) 연구실적물 심층심사	40%
4) 공개강의심사	15%
5) 외국어 공개강의 심사	15%
6) 면접심사	10%
합 계	100%

6. 신규임용후보자 결정

가. 기본자격심사, 전공일치도심사, 연구실적물 심층심사, 공개강의심사, 외국어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를 배점비율에 의거 합산하여 고득점자(모집단위별 2명 이상 채용할 경우 고득점자 순)를 신
규임용 후보자로 결정하되, 신규임용 후보자가 임용을 포기 시 해당 차순위자를 신규임용 후
보자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총장은 심사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적정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임용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총장은 임용예정자가 결정된 후라도 심사과정에서 불미한 일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에 의하여 결정한다.

- 1) 연구실적물 심층심사 점수가 높은 순
- 2) 외국어 공개강의심사 점수가 높은 순
- 3) 공개강의심사 점수가 높은 순
- 4) 전공일치도심사 점수가 높은 순
- 5)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순
- 6) 상기 각 항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소자, 장애인 지원자 순으로 결정한다.

7. 심사관리 등

가. 전임교원 신규채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1)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교무처장

나) 위원 : 단과대학장 또는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각 1명과 교무부처장

다) 기능

(1) 학과(전공)의 모집분야 심의

(2) 학과별 연구실적물 제출 비율 심의

(3) 각 심사위원 및 응모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와 총장이 불공정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방안 보고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 이외에 가부동수일 경우 결
정권을 가진다.

나. 총장은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한 불공정 판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1) 해당 신규채용 심사절차에 대해 진행을 중지하고, 불공정 판정을 받은 심사단계부터 심사위원을
재구성하여 재심사를 실시
- 2) 불공정 해당 심사위원: 불공정 판정일로부터 3년간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임명 제한
및 불공정 심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3) 불공정 학과로 조치를 받은 학과(전공)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공정 판정일로부터 3년간
전임교원 신규채용 정원 미배정

다. 총장은 기본자격심사, 공개강의심사, 외국어공개강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 후 학과(전공)의 교수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라. 총장은 합격자 사정 전에 응모자의 학문 발전에의 기여 및 전망, 개성, 품위 등에 대하여 학과
(전공) 교수회의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그 의견을 합격자 사정 시 참고할 수 있다.

마. 총장은 제6항에 의하여 선정된 임용후보자를 대학인사위원회에 동의 요청 하여야 하며, 대학
인사위원회는 동의여부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신규임용후보자 직명 결정

신규임용후보자의 직명 결정은 「공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되,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기준 및 환산율은 [별첨 12]에 의한다. 다만, 예체능 계열의 창작물(실기)은 [별첨 11]에 의한다.

9. 기타

- 가. 모든 심사의 평점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나.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다.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라.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 마. 공개채용결과 2회까지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학과(전공)가 발생하는 경우, 동 학과(전공)에 배정된 교원정원은 회수하며, 그 이후 2년간 동 학과(전공)에는 신규교원정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바. 국내 타 학교(기관 및 산업체 등)에 재직 중인 자는 임용예정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수 없다.
- 사. 심사진행 중 지원사항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자가 불미스런 사건이나 우리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원자의 심사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
- 아. 학력, 경력 및 학위사항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한다.
- 자. 심사위원(교내·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교내·외)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함.
 - 1) 지원자를 지도한 지도교수 및 논문공저자
 - 2) 지원자와 동일한 지도교수에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교내위원 중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자 등
- 차. 심사위원(교내·외) 중 동일 대학교의 동일학과 학사학위 소지자가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0. 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0년도 후반기 교원 신규채용 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1학년도 상반기 교원 신규채용 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1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이 지침은 200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0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지침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칙

[별첨 1]

기본자격심사표(일반 전임교수)

가. 인적사항

번호		초빙분야		성명	
----	--	------	--	----	--

나. 교수자격기준 적격 여부

심사항목	여부 (pass/fail)	비고
교육연구경력 충족여부 ([별첨 9]에 의거 환산)		
연구실적물 충족여부		
초빙공고에서 지정한 별도자격 충족여부 (별도 자격을 명시한 학과에 한하며, 해당이 없는 학과는 "pass"로 표기)		
통과 여부		

- ※ 각 심사항목별 pass/fail 로 표시
- ※ 모두 pass해야 전공일치도 심사대상자로 선정됨
- ※ 탈락자의 경우 탈락사유서를 작성하여,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의 최종심사 후 최종탈락자로 처리됨
- ※ 단,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탈락자가 재심사를 통과할 경우에는 기본자격심사 통과자로 처리됨
- ※ 수정 시 수정할 점수에 두 줄(=)을 긋고 심사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 후 심사표를 제출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기본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대학 학과(전공) 직명 : 성명 : (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1-1]

기본자격심사표(산학협력중점교수)

가. 인적사항

번호		초빙분야		성명	
----	--	------	--	----	--

나. 교수자격기준 적격 여부

심사항목	여부 (pass/fail)	비고
산업체경력 충족여부		
연구실적물 충족여부		
초빙공고에서 지정한 별도자격 충족여부 (별도 자격을 명시한 학과에 한하며, 해당이 없는 학과는 "pass"로 표기)		
통과 여부		

- ※ 각 심사항목별 pass/fail 로 표시
- ※ 모두 pass해야 전공일치도 심사대상자로 선정됨
- ※ 탈락자의 경우 탈락사유서를 작성하여,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의 최종심사 후 최종탈락자로 처리됨
- ※ 단,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탈락자가 재심사를 통과할 경우에는 기본자격심사 통과자로 처리됨
- ※ 수정 시 수정할 점수에 두 줄(=)을 긋고 심사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 후 심사표를 제출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기본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대학 학과(전공) 직명 : 성명 : (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기본자격 심사기준

1. 교육·연구경력·산업체 경력 (교수자격기준)적격 여부 확인

가. 일반 전임교수 교수자격기준

- 1) 교육·연구경력을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자(박사학위 소지자는 적격 처리,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참조

나. 산학협력중점교수 자격기준 및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1)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자
- 2)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 다만,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별첨 9)

-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단, 임용 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기준 3년 완화 대상: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경력기준 1년 완화 대상: 석사 학위 소지자

2. 연구실적물 충족 여부 확인

아래의 최소 기본자격과 채용분야별 세부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일반 전임교수

- 1) 인문·사회계열 :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게재 논문 200% 이상으로 함. 다만, 제출 논문 중 단독저자, 주저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이 10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 자연계열 : 국제전문학술지(SCI, SSCI, A&H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200% 이상으로 제출 논문 중 단독저자, 주저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이 100%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도 10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3) 예체능계열 :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창작물(국제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실기발표 및 공연) 중 아래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가) 논문 : 200% 이상
 - 나) 논문+창작물 : 300% 이상(단, 논문 100% 이상 포함)
 - 다) 창작물 : 400% 이상

※ 일부 지원자의 경우 인터넷 지원서에는 연구실적을 충족한다고 지원하였으나, 서류 검토 결과 연구실적에 결격사유가 있어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나. 산학협력 중점교수

- 1)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학협력실적물은 최근 10년 이내, 연구실적물(학위논문 제외)은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실적물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제출한 자여야 함
- 2) 산학협력실적물[기술이전, 국제특허등록, 국내특허등록, 산학관공동연구과제(연구책임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연구책임자)], 국제전문학술지(SCI, A&HCI, SSCI 및 SCIE급) 또는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게재 논문 연구실적물 또는 창작물(국제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실기발표 및 공연) 중 아래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가) 산학협력 실적물: 200% 이상
 - 나) 논문 연구실적물: 200% 이상
 - 다) 산학협력실적물+논문 연구실적물: 200% 이상
 - 라) 창작물(예체능계열): 200% 이상
 - 마) 산학협력 실적물 + 논문연구 실적물 + 창작물(예체능계열) : 200% 이상

※ 일부 지원자의 경우 인터넷 지원서에는 연구실적을 충족한다고 지원하였으나, 서류 검토 결과 연구실적에 결격사유가 있어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별도자격 제한 여부는 초빙공고에 초빙분야에 대한 자격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함 (Ex : 의사면허 소지자, 산업체 경력 5년 이상자, 특정대학 학부(과) 졸업자 제한 등)

※ 총장은 예·체능계열의 경우와 기타 학과심의 중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첨 3]

전공일치도심사표(일반 전임교수)

가. 인적사항

번호	초빙분야	성명
----	------	----

나. 심사항목 평정표

심사항목	배점	점수			점수 부여란
		A	B	C	
1. 학위를 취득한 전공(학과)과 초빙분야의 일치도	20	20	17	14	
2. 최종학위논문과 초빙분야의 일치도	20	20	17	14	
3. 교육 및 연구경력과 초빙분야의 일치도	20	20	17	14	
4. 최근 3년간 연구 실적(학위논문제외)	40	/			
점수합계	100				총계

※ 심사항목별 점수에 해당 점수를 표기하고, 점수합계를 기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 평정 점수 수정 시 수정할 점수에 두 줄(=)을 긋고 심사위원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후 심사표를 제출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전공일치도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대학 학과(전공) 직명 : 성명 : (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3-1]

전공일치도심사표(산학협력중점교수)

가. 인적사항

번호	초빙분야	성명
----	------	----

나. 심사항목 평정표

심사항목	배점	점수			점수 부여란
		A	B	C	
1. 학위를 취득한 전공(학과)과 초빙분야의 일치도	20	20	17	14	
2. 최종학위논문과 초빙분야의 일치도	20	20	17	14	
3. 산업체경력과 초빙분야의 일치도	40	40	35	30	
4. 최근 3년간 연구 실적(학위논문제외)	20	/			
점수합계	100				총계

※ 심사항목별 점수에 해당 점수를 표기하고, 점수합계를 기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 평정 점수 수정 시 수정할 점수에 두 줄(=)을 긋고 심사위원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후 심사표를 제출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전공일치도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대학 학과(전공) 직명 : 성명 : (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4]

전공일치도 심사기준

1. 학위를 취득한 전공(학과)과 초빙분야의 일치도(20점)

- A(20) : 초빙분야와 동일하거나 전공이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B(17) : 초빙분야와의 일치도가 50% 이상인 경우
- C(14) : 초빙분야와의 일치도가 50% 미만인 경우

2. 최종학위논문과 초빙분야의 일치도(20점)

- A(20) : 초빙분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B(17) : 초빙분야와의 일치도가 50% 이상인 경우
- C(14) : 초빙분야와의 일치도가 50% 미만인 경우

※ 무논문제로 최종학위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학위취득 시 심사 받은 내용, 상응자격 및 상응경력 등을 참고하여 심사

3. 교육 및 연구경력과 초빙분야의 일치도(20점)(일반 전임교수)

- A(20) : 교육 및 연구경력이 초빙분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B(17) : 초빙분야와의 일치도가 50% 이상인 경우
- C(14) : 초빙분야와의 일치도가 50% 미만인 경우

3-1. 산업체경력과 초빙분야의 일치도(40점)(산학협력중점교수)

- A(40) : 산업체경력이 초빙분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B(35) : 초빙분야와의 일치도가 50% 이상인 경우
- C(30) : 초빙분야와의 일치도가 50% 미만인 경우

4.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연구 실적(40점)(일반 전임교수)/(20점)(산학협력중점교수)

최근 3년 연구실적 논문 등 심사표의 최종점수의 취득 점수를 반영

※ 연구실적물의 인정지수

인정지수	인용지수 등	비고
1	인용지수 (5.0) 이상, 국제특허등록(산), 기술이전(산)	
0.8	인용지수 (2.0) 이상, 박사학위 논문, 국제전(예), 국내특허등록(산), 산학관공동연구과제(산)	
0.6	인용지수 (1.0) 이상, 전국전(예), 기타 연구과제(산)	
0.5	인용지수 (1.0) 미만, 지방전(예)	
0.4	기타 국제 학술지, 학진등재지	
0.3	학진등재후보지	

· (산): 산학협력중점교수/ (예) 예-체능계열 및 건축설계분야

1.1.1. [별첨 4-1]

최근 3년 연구실적 논문 등 심사표

순번	연구실적 제목	발표 년월일	발표기관 (지)명	저자수	주저자/제 1저자,교신 저자	인용지수	인정	인정	전공	계
							환산율 (①)	지수 (②)	일치도 (③)	
1										
2										
3										
4										
계										
중 합 평 가										
연구 실적 계					배 점		최종점수 (40점 만점)			
400% 이상					40					
375% 이상 ~ 400% 미만					38					
350% 이상 ~ 375% 미만					36					
325% 이상 ~ 350% 미만					34					
300% 이상 ~ 325% 미만					32					
275% 이상 ~ 300% 미만					30					
250% 이상 ~ 275% 미만					28					
225% 이상 ~ 250% 미만					26					
200% 이상 ~ 225% 미만					24					
150% 이상 ~ 200% 미만					22					
150% 미만					20					

※ 인정환산율(①)은 지원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첨 10], [별첨 11], 인정지수(②)는 [별첨 4]를 적용

※ 전공일치도(③)는 1점, 0.8점, 0.5점 중에서 택일

※ 연구/실기 실적물은 공고문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연구실적물은 접수마감일 기준 3년(산학실적물은 10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고, 최종점수는 20점 만점으로 환산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 성명 : (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5]

연구실적물 심층심사서(일반 전임교수)

가. 인적사항

번호	초빙분야	성명	
----	------	----	--

나. 연구실적(심층)심사 점수(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번호	연구실적 제목	발표 년월일	발표 기관 (지)명	저자수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인용 지수	인정 환산율 (①)	인정 지수 (②)	연구실적물의 우수성정도(③)						환산 점수 (①×②×③)
									A	B	C	D	E	F	
									1.0	0.9	0.8	0.7	0.6	0.5	
1															
2															
3															
4															
5															
계															

※ 인정환산율(①)은 [별첨 10]으로 산출한다.

다. 연구실적(심층)심사 점수(예·체능계열 및 건축설계 분야)

번호	창작물 및 입상실적 등	발표 년월일	발표기관 (지)명	인정 환산율 (①)	인정 지수 (②)	창작물·입상실적의 우수성(③)						환산 점수 (①×②×③)	
						A	B	C	D	E	F		
						1.0	0.9	0.8	0.7	0.6	0.5		
1													
2													
3													
4													
계													

※ 인정환산율(①)은 [별첨 11]으로 산출한다.

라. 종합의견

	환산총점
--	------

※ 지원자가 신청한 우수논문 순으로 3년 이내 박사학위논문 포함 300%(5편 이내)까지만 평가하여 인정

※ 심층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제출한 박사학위논문과 동일 또는 편집하여 제출한 논문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연구실적심사 점수표에 인정환산율, 인정지수를 확인하고, 연구실적물의 우수성을 심층 심사하여 환산 점수를 기재한 후 환산점수를 합산한 환산총점과 종합의견을 기재한 다음 심사위원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 평정 점수 수정 시 수정할 점수에 두 줄(=)을 긋고 심사위원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후 심사표를 제출

※ 연구실적물의 인정지수

인정지수	인용지수 등	비고
1	인용지수 (5.0) 이상, 국제특허등록(산), 기술이전(산)	
0.8	인용지수 (2.0) 이상, 박사학위논문, 국제전(예), 국내특허등록(산), 산학관공동연구과제(산)	
0.6	인용지수 (1.0) 이상, 전국전(예), 기타 연구과제(산)	
0.5	인용지수 (1.0) 미만, 지방전(예)	
0.4	기타 국제 학술지, 학진등재지	
0.3	학진등재후보지	

· (산): 산학협력중점교수/ (예) 예체능계열 및 건축설계분야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연구실적물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대학교 학과(전공)

 전공명 :

 직 명 :

 성 명 : (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5-1]

연구실적물 심층심사서(산학협력중점교수)

가. 인적사항

번호	초빙분야	성명
----	------	----

나. 연구실적(심층)심사 점수(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번호	연구실적 제목	발표 년월일	발표기관 (지명)	저자 수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인용 지수	인정 환산율 (①)	인정 지수 (②)	연구실적물의 우수성정도(③)						환산 점수 (①×②×③)	
									A	B	C	D	E	F		
									1.0	0.9	0.8	0.7	0.6	0.5		
계																

다. 연구실적(심층)심사 점수(예·체능계열 및 건축설계 분야)

번호	창작물 및 입상실적 등	발표 년월일	발표기관 (지명)	인정 환산율 (①)	인정 지수 (②)	창작물·입상실적의 우수성(③)						환산 점수 (①×②×③)			
						A	B	C	D	E	F				
						1.0	0.9	0.8	0.7	0.6	0.5				
계															

라. 산학협력실적심사 점수(전 분야)

① 특허

번호	발명의 명칭	등록일	등록국가	발명 자수	주발명 자	인정 환산율 (①)	인정 지수 (②)	연구실적물의 우수성정도(③)						환산 점수 (①×②×③)	
								A	B	C	D	E	F		
								1.0	0.9	0.8	0.7	0.6	0.5		
계															

② 기술이전

번호	지식재산권의 명칭	계약일	수입료 (백만원)	발명 자수	주발명 자	인정 환산율 (①)	인정 지수 (②)	연구실적물의 우수성정도(③)						환산 점수 (①×②×③)	
								A	B	C	D	E	F		
								1.0	0.9	0.8	0.7	0.6	0.5		
계															

③ 연구과제

번호	과제명	연구비 (백만원)	지원기관	연구 기간	연구원 수	인정 환산율 (①)	인정 지수 (②)	연구실적물의 우수성정도(③)						환산 점수 (①×②×③)	
								A	B	C	D	E	F		
								1.0	0.9	0.8	0.7	0.6	0.5		
계															

마. 종합의견

	환산총점
--	------

- ※ 지원자가 신청한 우수논문 순으로 3년 이내 박사학위논문 포함 300%(5편 이내)까지만 평가하여 인정
- ※ 심층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제출한 박사학위논문과 동일 또는 편집하여 제출한 논문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 연구실적심사 점수표에 인정환산율, 인정지수를 확인하고, 연구실적물의 우수성을 심층 심사하여 환산점수를 기재한 후 환산점수를 합산한 환산총점과 종합의견을 기재한 다음 심사위원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 ※ 평정 점수 수정 시 수정할 점수에 두 줄(=)을 긋고 심사위원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후 심사표를 제출

※ 연구실적물의 인정지수

인정지수	인용지수 등	비고
1	인용지수 (5.0) 이상, 국제특허등록(산), 기술이전(산)	
0.8	인용지수 (2.0) 이상, 박사학위논문, 국제전(예), 국내특허등록(산), 산학관공동연구과제(산)	
0.6	인용지수 (1.0) 이상, 전국전(예), 기타 연구과제(산)	
0.5	인용지수 (1.0) 미만, 지방전(예)	
0.4	기타 국제 학술지, 학진등재지	
0.3	학진등재후보지	

· (산): 산학협력중점교수/ (예) 예·체능계열 및 건축설계분야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연구실적물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대학교 학과(전공)

전공명 :

직 명 :

성 명 : (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6]

공개강의심사평정표(공통)

번호	초빙분야	성명
심사항목		심사점수범위
1. 강의주제 선택과 초빙분야와의 연관성		12 ~ 20점
2. 강의내용의 구성(논리성, 관련 지식 수준 등)		12 ~ 20점
3. 설명의 명료성 및 강의방법, 강의태도		12 ~ 20점
4. 강의자료 충실도 및 강의매체 활용도		12 ~ 20점
5. 공개 강의내용에 대한 질문 처리 능력		12 ~ 20점
합계점수		
종합의견		

- ※ 항목별로 평정 점수를 기재하고, 심사위원 서명 날인하여 제출
- ※ 평정 점수 수정 시 수정할 점수에 두 줄(=)을 긋고 심사위원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후 심사표를 제출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공개강의 심사 평정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대학 학과(전공) 직명 : 성명 : (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7]

외국어 공개강의심사평정표(공통)

번호	초빙분야	성명
심사항목		심사점수범위
1. 설명의 명료성		0 ~ 20점
2. 강의 능숙도		0 ~ 20점
3. 표현 능력		0 ~ 20점
4. 의사소통 능력		0 ~ 20점
5. 질문처리 능력		0 ~ 20점
합계점수		
종합의견 (합계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 항목별로 평정 점수를 기재하고, 심사위원 서명 날인하여 제출
- ※ 평정 점수 수정 시 수정할 점수에 두 줄(=)을 긋고 심사위원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후 심사표를 제출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외국어 공개강의 평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학 학과(전공) 직명 : 성명 : (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률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70%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60%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0%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0%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60%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3)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70%
①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②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4) 판사·검사로서 근무한 경력	100%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률
(5)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의 개업기간	70%
(6)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졸업자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한국항공대학교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8)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개업기간	70%
(9)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70%
(1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70%
(11)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50%
(12)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13)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 경력	70%

연구실적물에서의 역할 및 참여자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논문		단독 논문, 박사학위논문: 100% Nature, Science, Cell 논문의 주저자: 100% 공동논문의 주저자: 2인: 90%, 3인: 80%, 4인: 70%, 5인: 60%, 6인 이상: 50% 공동저자: $100\% \times 1 / (N+1)$
산학협력 실적	연구과제	국내 산업체 · 연구소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 국가기관 · 연구소 ·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 완료한 연구과제 중 기준액 이상의 과제 (단, 『소속기관의 간접비 징수 규정』에 따라 간접비 가 계상·납부된 과제에 한함) 연구책임자: $100\% \times (\text{연구비} / \text{기준액}) \times \text{계열별 가중치}$ ※ 기준액: 1억원/년 ※ 계열별 가중치 자연계열: 1,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1.2
	기술이전	※ 소속기관으로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기준액 이상의 기술이전만 인정 주발명자: $100\% \times (\text{기술이전 수입료} / \text{기준액}) \times \text{계열별 가중치} \times 2 / (N+1)$ 공동발명자: $100\% \times (\text{기술이전 수입료} / \text{기준액}) \times \text{계열별 가중치} \times 1 / (N+1)$ ※ 기준액: 5,000만원/건 ※ 계열별 가중치 자연계열: 1,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1.2
	특허등록	주발명자: $100\% \times 2 / (N+1)$, 공동발명자: $100\% \times 1 / (N+1)$

1. N은 논문의 경우 저자 수를 뜻하며, 기술이전 및 특허의 경우 발명자의 수를 뜻함. N이 6 이상일 경우 N을 6으로 함
2. 주저자는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뜻함
3. 산학협력 실적은 산학협력중점교수만 해당됨
4.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5. 최근 3년 이내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실적물 심층심사 대상으로 선택 가능

예·체능 및 건축설계 연구실적 인정범위·기준 및 인정환산율표

인정범위·기준	인정환산율
1. 미술	
(1) 개인전	100%
(2) 2인전	
① 국제	90%
② 국내	70%
(3) 3인전	
① 국제	70%
② 국내	50%
(4) 공모전	
① 국제 특선 이상	100%
② 국제 입선	70%
③ 국내(전국) 특선 이상	70%
④ 국내(전국) 입선	50%
(5) 공인된 초대전 또는 기획전	
① 국제	70%
② 국내	30%
(6) 국제전 심사위원 1회	100%
(7)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①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100%
② 시도 단위 공모전 심사위원 1회	50%

* 1. 미술의 (6), (7)항목은 연구실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인”이란 “지자체(군 제외) 및 공공기관에 등록된 학회, 협회, 언론사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한 것”을 의미

인정범위기준	인정환산율
2. 음악	
(1)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독주회·개인작곡발표회·지휘(전체 프로그램 수행) 1회	100%
(2) 국내·외에서 인정된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협연, 지휘(전체 프로그램의 2/3이상 수행) 1회	70%
(3) 국내·외에서 인정된 발표회의 3중창 이상, 3중주 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반주, 지휘(전체 프로그램의 1/2 이상 2/3 미만 수행) 1회	50%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음악회, 연주회, 작곡발표회 및 지휘	30%
(5) 같은 작품으로 여러 회에 걸쳐 지휘한 경우에는 추가 1회당 10%를 인정(초연 지휘는 위의 기준에 따라 인정)	10%
(6) 기타 인정된 종합연주회 등	
①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1회 및 반주 3회	30%
② 협주곡 협연, 오페라 주역 1회	100%
3. 체육	
(1) 공인된 체육단체(학술, 시도교육청)에서 개인연구발표회 입상	
① 전국 1등급	100%
② 지방 1등급	80%
③ 전국 2등급	80%
(2) 올림픽 경기(국제대회)	
① 1등	100%
② 2등	80%
③ 3등	60%
④ 출전	40%
(3) 전국대회 입상 2회	
① 1등	100%
② 2등	80%
③ 3등	60%
(4) 국제공인대회 감독 또는 코치자격	100%
(5) 국제심판 참여	100%
(6) 국제심판 자격보유	100%
(7)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보유(1급)	100%
(8) 광역시도문화상 수상 및 국가자격고사 출제위원	100%

- * 2. 음악의 “국내·외에서 인정된 지휘”의 범위는 아래와 같은 수준 이상을 적용한다.
- 가. 해외 현지 교향악단, 오페라단 등
 - 나. 국내 시향급 이상의 교향악단, 관현악단, 오페라단, 시립합창단, 시립국악관현악단 등
 - ※ 가, 나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교향악단’ 등에 대한 지휘 실적은 환산율표의 2. 음악 (4)항을 적용하되, 학생 등 비전문연주자로 구성된 교향악단 등 지휘 실적은 불인정
- * 3. 체육의 (4),(5),(6),(7),(8)항목은 연구실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 ※ “공인”이란 “지자체(군 제외) 및 공공기관에 등록된 학회, 협회, 언론사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한 것”을 의미함

인정범위기준	인정 환산율
4. 건축설계 (건축학전공에 한함.)	
(1) 국제규모 설계경기 현상설계 입상 이상	
① 단독설계	100%
② 2인 공동 설계	80%
③ 3인 이상 공동설계	60%
(2) 전국규모 설계경기 현상설계 당선	
① 단독설계	80%
② 2인 이상 공동설계	40%
(3) 건축 전문지에 각종 도면등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게재된 건축설계 작품	
① 단독설계	80%
② 2인 공동 설계	60%
③ 3인 이상 공동설계	40%
(4) 건축작품전	
① 개인 작품전	100%
②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 초대 및 기획 초대전	30%
(5) 실제 시공된 작품 설계	
① 단독설계	50%
② 2인 이상 공동설계	30%
5. 무용 (무용학과에 한함.)	
(1) 단독 안무 개인발표회(40분 이상)	
① 국외 극장 단독 안무 개인발표회	100%
② 국내 대극장(500석 이상) 단독 안무 개인발표회	100%
③ 국내 중, 소극장(200석 이상) 단독 안무 개인발표회	80%
(2) 국내외 공인된 단체의 무용 기획공연에서 본인 단독 안무 공연(20분 이상)	50%
(3) 공인된 각종 발표회(경연대회)에서 특선 1회	100%
(4) 공인된 각종 발표회(경연대회)에서 입선 1회	60%

6. 창작실기 활동	
(1)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100%
(2)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2회	100%
7.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 1회	200%

* 4. 건축설계는 건축학전공 지원자에 한하여 인정됨

* 5. 무용은 무용학과 지원자에 한하여 인정됨

※ (3), (4)에서 특선(금상), 입선(은상, 동상)을 말하며, 동아콩쿨, 무용협회콩쿨, 국제콩쿨에서 개인부분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것만 인정함

※ 국·시립단체 및 상주단체의 안무가로서 발표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공연 작품은 1회만 인정함

※ “공인”이란 “지자체(군 제외) 및 공공기관에 등록된 학회, 협회, 언론사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한 것”을 의미함

[별첨 12]

연구실적물의 세부 항목별 인정환산율과 기준(직명 결정용)

1. 연구 실적물의 인정범위·기준(전 계열 공통)

인정범위		인정 환산율	기준	
구분	세부구분			
논문	국제 전문 학술지	150%	SCI, SSCI, A&HCI, SCIE 등재 학술지(후보)에 게재된 논문(편당)	
	국내 전문 학술지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후보)에 게재된 논문(편당) ※ 등재후보지는 80%인정	
특허	국제특허	150%	특허등록에 한하여 인정	
	국내특허	100%		
저서	국제 전문학술서	120%	ISBN에 등록된 전공과 관련 있는 200쪽 이상의 저서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는 인정하지 않음)	
	국내 전문학술서 및 대학교재	120%	① 국내외 출판사에서 출판된 저자 1인당 발행부수 500권 이상	
	번역서	외국 학술 서적	100%	② 본인이 담당하지 않은 타 대학교 관련학과 강의에서 주교재로 사용함을 입증할 증빙서 제출 ③ 학술기관 지원으로 출판된 저서와 번역서 ※편 저 : 인정환산율의 50%인정 ※개정판 : 인정환산율의 30%인정
	초·중·고교 교과서		100%	ISBN에 등록된 검인정교과서(권당) 또는 국정교과서(권당)로서 저자 1인당 발행부수 5,000권 이상인 교과서 ※편 저 : 인정환산율의 50%인정 ※개정판 : 인정환산율의 30%인정
산학협력 실적	연구과제	100%	국내 산업체 · 연구소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 국가기관 · 연구소 ·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 완료한 연구과제 중 기준액 이상의 과제(단, 『소속기관의 간접비 징수 규정』에 따라 간접비가 계상·납부된 과제에 한함) ○점수=(연구비/기준액)×인정환산율(100%) × 계열별 가중치 ※ 기준액: 1억원/년 ※ 계열별 가중치	

			- 자연계열: 1 -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1.5
	기술이전	150%	※ 소속기관으로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기준액 이상의 기술이전만 인정 ○ 점수=(기술이전 수입료/기준액)×인정환산율 (150%) × 계열별 가중치 ※ 기준액: 5,000만원/건 ※ 계열별 가중치 - 자연계열: 1 -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1.5

2. 연구 실적물의 환산율

- 가. 연구 실적물의 환산율은 연구자의 수에 따라, 단독 연구의 경우 100%, 2인 공동 연구의 경우 70%, 3인 공동연구의 경우 50%, 4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 30%로 함
- 나. 공동 연구 실적물 중 주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논문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환산율에 10%를 가산
- 다.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별첨 13]

기본자격심사탈락 사유서(일반 전임교수)

가. 인적사항

번호		초빙분야		성명	
----	--	------	--	----	--

나. 심사항목별 심사의견 및 탈락사유

심사항목	심사의견 및 탈락사유
교육연구경력 충족 여부 ([별첨 9]에 의거 환산)	
연구실적물 충족 여부	
초빙광고에서 지정한 별도자격 충족 여부 (별도 자격을 명시한 학과에 한하며, 해당이 없는 학과는 "pass"로 표기)	

- ※ 탈락자의 경우 탈락사유서를 작성하여,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의 최종심사 후 최종탈락자로 처리
- ※ 단,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탈락자가 재심사를 통과할 경우에는 기본자격심사 통과자로 처리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기본자격심사 탈락자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장): 대학 학과(전공) 직명 : 성명 : (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

기본자격심사탈락 사유서(산학협력중점교수)

가. 인적사항

번호		초빙분야		성명	
----	--	------	--	----	--

나. 심사항목별 심사의견 및 탈락사유

심사항목	심사의견 및 탈락사유
산업체경력 충족 여부	
연구실적물 충족 여부	
초빙공고에서 지정한 별도자격 충족 여부 (별도 자격을 명시한 학과에 한하며, 해당이 없는 학과는 "pass"로 표기)	

- ※ 탈락자의 경우 탈락사유서를 작성하여,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의 최종심사 후 최종탈락자로 처리
- ※ 단, 교수채용공정관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탈락자가 재심사를 통과할 경우에는 기본자격심사 통과자로 처리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기본자격심사 탈락자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장): 대학 학과(전공) 직명 : 성명 : (인)

공주대학교총장 귀하